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기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체계를 정비하며,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장소 및 관측된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을 신설하며, 기상현상별 특보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체계 정비(안 제2조 및 제4조)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구체화하고 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기상관측망의 세분화(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및 제5조의3 신설 · 안 제5조)

기상관측망을 지상기상 · 고층기상 · 해양기상 · 항공기상 · 도로기상 · 기상위성 · 기상레이더 · 기후변화 관측망으로 세분화하고 각 관측망별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예보 및 특보 업무의 상세화(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9조의2 및 제12조의2 신설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

- 1) 예보 및 특보를 분리하고 기상현상별 특보의 기준을 정함.
- 2) 수문기상 정보의 내용 및 제공기간을 정함.
- 3)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을 정함.
- 4) 특보 · 해양기상특보 등의 통보처를 정비함.
- 5) 특보 및 예비특보의 통보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등 기상청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

라.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3).

바.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관측, 기상관측망의 운영, 특보 및 예비특보 등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23조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조정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관 분야에 대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상업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상관측망 구축·관리를 위한 관측소의 구축·관리
2. 관측자료 수집·관리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관리
3. 기상관측망 구축·관리 및 관측자료 수집·관리를 위한 표출시스템의 구축·관리
4. 기상관측망 구축·관리 및 관측자료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5. 관측자료의 수집·생산, 분석 및 배포
6. 관측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7. 기상관측망 구축·관리 및 관측자료의 수집·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8. 기상관측망 구축·관리 및 관측자료의 수집·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그 밖에 기상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3(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및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예비특보”라 한다)의 대상구역 중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지상기상 관측망에서 생산된 정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4(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및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 중 고도별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고층기상 관측망에서 생산된 정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5(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의 대상구역 중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2에 필요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기상청장이 지정·고시한다.

③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관측망 구축 사업계획서

2. 관측망을 구성하는 기상측기의 내역서 및 구성도

④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집·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6(도로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도로 위험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도로기상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도로기상 관측망에서 생산된 정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활용

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법 제19조에 따른 방법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 제목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을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 및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수집·분석”을 “수집·생산·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상위성의 개발
2. 기상위성 지상국의 구축, 운영 및 관제
4.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정·보정 등의 품

질관리 및 개선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1. 정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2. 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3. 초소형 기상위성 관측망

4.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관측망(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은 제외한다)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측망

제5조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을 “제1항”으로, “정보”를 “관측된 정보”로,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구축·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 또는 제14조의2”로,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재가공”을 “품질관리·분석·재가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

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기상청장은 국내 기상레이더 및 강우레이더를 운영하는 기관의 기상·강우레이더관측정보가 상호 교환되고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기상·강우레이더관측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상·강우레이더관측정보의 실시간 상호 교환을 위한 자료 형식 및 전송 방식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하여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관측망을 통해 관측된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등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 수집·활용시스템의 구축·운영
2.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 분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한”을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위험수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폭염 영향예보

2. 한파 영향예보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③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④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은 제외한다.

⑤ 제1항(제4호의 장기예보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여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현상의 실황 및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와 관련하여 상세구역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특보)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이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호우
2. 대설
3. 태풍
4. 강풍
5. 황사
6. 건조
7. 한파
8. 폭염
9. 풍랑
10. 폭풍해일

② 예비특보는 제1항에 따른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한다.

1. 대상구역
2.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3. 그 밖에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 영해와 영해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있는 해역으로 하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와 관련하여 상세구역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하천 관리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정보
2. 댐 운영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정보
3. 그 밖에 물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상정보

②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기간은 제8조제1항의 예보대상기간을 준용한다.

③ 수문기상 정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유역 단위로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이하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시·군 단위로 발표해야 한다.

1. 1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주의 다음 다섯 번째 주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2. 3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 ⑤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⑥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외에 국가 가뭄 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학적 가뭄의 통계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문기상 정보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세부 내용·발표시각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4(태풍예보)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 1. 북위 60° 00' 00"와 동경 180° 00' 00"의 교점
- 2. 북위 60° 00' 00"와 동경 100° 00' 00"의 교점
- 3. 북위 00° 00' 00"와 동경 100° 00' 00"의 교점
- 4. 북위 00° 00' 00"와 동경 180° 00' 00"의 교점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 2. 태풍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3. 그 밖에 태풍으로 인한 재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태풍예보의 발표시각·예보 대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 제목“(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를“(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는 하늘상태·파고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해양기상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2. 해양기상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여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현상의 실황 및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해양기상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이 별표 1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태풍
2. 풍랑

3. 폭풍해일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한다.

1. 대상구역

2.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3.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데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 영해와 영해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있는 해역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영해에 대하여도 해양기상예보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와 관련하여 상세구역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해양기상예측정보) ① 기상청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항만, 항로 및 조업 해역 등에서의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고·해상풍·해무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해양기상예측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1. 항만기상예측정보
2. 항로기상예측정보
3. 어업기상예측정보
4. 해무예측정보

② 해양기상예측정보의 대상구역은 제9조제5항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예측정보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를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의2제1항”으로,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예보”를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

표하되, 항공기상특보의 종류별 기상현상은 별표 2와 같다.

1. 공항경보
2. 급변풍경보
3. 위험기상정보(SIGMET)
4.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특보의 대상 구역은 공항, 비행정보구역 및 항공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와 관련하여 발표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을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의2제1항”으로, “항공예보를 제공하여야”를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지구자기장 교란 등이 기상위성 운영,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기상에 주는 영향 및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의 중장기적 변동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제11조의2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는 지구자기장 교란 등이 기상위성 운영,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기상에 주는 영향에 따른 재해발생의 예상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2. 국방부
3. 행정안전부
4. 해양수산부
5. 해양경찰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해양안전을 위하여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2조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항공특보”를 “항공기상특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5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법 제15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의4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7호) 중 “기상특보”를 “특보”로 한다.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 국무조정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12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신알림”을 “전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조치담당자와 특보등의 수신설비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를 “담당자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기관(항공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을 제외한다)이 제4항”을 “기관이 제5항”으로, “제5항에 따른 조치담당자와 관리담당자”를 “제6항에 따른 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기상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등 통보 방법, 수신 절차 등 특보의 통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특보 및 예비특보의 통보에 따른 조치) ① 기상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특보로 한정한다) 및 제2항(해양기상특보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보보다 우선하여 특보를 활용해야 한다.

제13조제1호 중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제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8조의2제1항 각 호(태풍은 제외한다) 및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법 제3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0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기상 관련”을 각각 “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상”을 “기상과학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1. 기상과학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기상과학관의 설립 추진 및 운영 계획
3. 기상과학관의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4. 기상과학관 설립 부지 조성계획

③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과학관 설립·운영 사전협의 신청서 및 사전평가 결과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기상과학관 설립을 위한 사업을 발주해서는 안 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과학관 설립·운영 사전협의 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 기관에 알린 후 사전협의 결과 통보를 1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 및 사전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별표 3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강사현황(강사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제20조의3(중전의 제20조의2)의 제목 “(기상과학관의 운영 등)”을 “(기상과학관의 설립·운영 등)”으로 한다.

제23조를 제2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처리방법”을 “처리방법 및”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지구대기 등 기후 감시”를 “지구대기감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종사자 등의”를 “종사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4조의4에 따른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2의3. 법 제23조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활용

4의2. 법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교육 실시

4의3. 법 제35조의6제1항 및 법 제35조의7에 따른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의 운영·홍보

6.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제23조의2(중전의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자”란을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매 반기”를 “매 반기”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의 2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의 권한을 수치모델링센터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상·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 대상별 교육
2. 법 제35조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
3.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인에 대한 교육
4.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5. 법 제35조의4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6.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7.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

③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역에 따른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

2. 법 제7조제2항제8호 및 이 영 제4조의6에 따른 도로기상 관측망의 운영에 필요한 도로기상 관측장비의 입지·환경 관리 및 도로기상 관측시설의 운영
3.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운영에 필요한 지상기상 관측장비의 입지·환경 관리 및 지상기상 관측시설의 운영
4. 법 제7조의3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운영에 필요한 고층기상 관측장비의 입지·환경 관리 및 고층기상 관측시설의 운영
5.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의 운영에 필요한 해양기상 관측장비의 입지·환경 관리 및 해양기상 관측시설의 운영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7. 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태풍특보 및 태풍예비특보는 제외한다)
8.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9.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기상센터의 운영
10.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의 운영
 - ④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⑤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의 권한을 기상레이더센터장에게 위임한다.

⑥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운영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및 공
고

⑦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기상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할지역 내 기상현상의 관측
2.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의 구축·운영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⑧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 소관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권한을 수치모델링센터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5조 중 “별표”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 제2호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35조의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2호	30	50	10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기상법」 제35조제1항”을 “「기상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3항”으로 한다.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9호 중 “기상업무에 관한”을 “국가기상”으로 한다.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을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예보”를 “해양기상예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을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3호 중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기상특보”를 “특보 또는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⑦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에 따라 발표하는 선박의 안전 운항에 관한 특보”를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⑧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비고 제1호 중 “제8조제2항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지진해일주의보·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지진해일경보·태풍경보·풍랑경보”를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폭풍해일주의보·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태풍경보·풍랑경보·폭풍해일경보·지진해일경보”로 한다.

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상특보”를 “제13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특보 또는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별표 1]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종 류	주 의 보	경 보
호 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 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 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강 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 /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 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 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 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 /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 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 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 상이 예상될 때
황 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800\mu\text{g}/\text{m}^3$ 이상이 2시 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 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 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 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 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 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 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 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 될 때

폭염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비고: 황사주의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및 경보로 대체한다.

[별표 2]

항공기상특보 종류별 기상현상(제10조제2항 관련)

종 류	기 상 현 상
공항경보	1. 태풍 2. 뇌우(雷雨: 번개, 강풍, 우박 등을 동반한 강한 비) 3. 우박 4. 대설 5. 강풍 6. 호우 7. 구름고도(Ceiling: 하늘의 5/8 이상을 가리는 최하층 구름고도) 8. 저시정(低視程) 9. 먼지 또는 모래보라 10. 그 밖에 공항시설 및 주기 중인 항공기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현상
급변풍경보	1. 급변풍
위험기상정보 (SIGMET)	1. 태풍 2. 뇌우 3. 난류 4. 착빙(着氷: 공기 중에 냉각된 물방울이 항공기 기체에 얼음으로 달라붙는 현상) 5. 산악파(山岳波: 기류가 산을 넘을 때 생기는 대기 파동) 6. 화산재 7.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현상
저고도 위험기상정보 (AIRMET)	1. 지상 풍속 2. 지상 시정 3. 구름 4. 뇌우(적란운 포함) 5. 난류 6. 착빙 7. 산악 차폐 8. 그 밖에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현상

[별표 3]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인력 3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기사 또는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기상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라. 기상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마. 기상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2. 시설·장비기준

가. 교육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나. 교육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시청각 장비 등 교육훈련 기자재를 확보할 것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② (생략)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u>종합·조정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다.</u> <u><신설></u>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u> ④ 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 <u>시행계획</u> ”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관 분야에 대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u><삭제></u>
제3조(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u>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투자에 관한 금액을 100
분의 3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가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
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수립지침
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
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
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
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소관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
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상업무에 대하여 그 내
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상관측망 구축·관리를 위한 관측소의 구축·관리
2. 관측자료 수집·관리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관리
3. 기상관측망 구축·관리 및 관측자료 수집·관리를 위한 표출시스템의 구축·관리
4. 기상관측망 구축·관리 및 관측자료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5. 관측자료의 수집·생산, 분석 및 배포
6. 관측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7. 기상관측망 구축·관리 및 관측자료의 수집·활용을 위

<신 설>

한 연구개발

8. 기상관측망 구축·관리 및 관측자료의 수집·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그 밖에 기상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3(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및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예비특보”라 한다)의 대상구역 중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지상기상 관측망에서 생산된 정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신 설>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4(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및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 중 고도별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고층기상 관측망에서 생산된 정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5(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

<신 설>

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의 대상구역 중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2에 필요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기상청장이 지정·고시한다.

③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관측망 구축 사업계획서

2. 관측망을 구성하는 기상측기

<신 설>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 ·

의 내역서 및 구성도

- ④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의 구축 ·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집 ·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제4조의6(도로기상 관측망의 구축 ·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도로 위험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법 제7조 제2항제8호에 따른 도로기상 관측망을 구축 · 운영해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도로기상 관측망에서 생산된 정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 · 활용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법 제19조에 따른 방법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기상 관측망의 구축 · 운영 및 정보의 수집 · 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 ·

운영) <신 설>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신 설>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1. 정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2. 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3. 초소형 기상위성 관측망
4.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관측망(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은 제외한다)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측망

② ----- 제1항-----

----- 관측된 정보-----

-- 수행해야 ----.

1. 기상위성의 개발
2. 기상위성 지상국의 구축, 운영 및 관제
7. (현행 제1호와 같음)
6. (현행 제2호와 같음)
8. (현행 제3호와 같음)
4.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정·보정

4. (생략)

5.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수집 ·
분석 및 배포

6. (생략)

<신설>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해 관측된 정보(이하

등의 품질관리 및 개선

5. (현행 제4호와 같음)

3. ----- 수집 ·
생산·분석 -----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

-----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 또는 제14조의2-----

“기상레이더관측정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에 필요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략)
 2. 기상레이더관측정보의 분석
· 재가공
 3. (생략)
-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
측망의 구축·운영 및 기상레이
더관측정보의 수집·활용에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
이 정한다.

----- 수행해
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품질
관리·분석·재가공
3. (현행과 같음)

④ 기상청장은 국내 기상레이더
및 강우레이더를 운영하는 기관
의 기상·강우레이더관측정보
가 상호 교환되고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기상·강우레이더관측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상·강우레이더관측정보의
실시간 상호 교환을 위한 자
료 형식 및 전송 방식 기준 마
련에 관한 사항

⑤ ----- 제4항-----

-----.

<신 설>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
보)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5조의3(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구대
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 및 기후
변화 감시를 위하여 관측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기후
변화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3제1
항에 따라 기후변화 관측망을
통해 관측된 지구대기감시관측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1.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
도 등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
수집·활용시스템의 구축·운
영

2.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 분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
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
한 예보) ①-----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 · 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 4. (생략)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삭제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11. 폭염

12. 삭제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제2항 각

----- 대한 -----

-----.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 · 위험수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폭염 영향예보

2. 한파 영향예보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③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호의 기상현상별로 기상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발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세부종류·내용, 대상 구역,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 설>

로 한다.

④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은 제외한다.

⑤ 제1항(제4호의 장기예보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여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현상의 실황 및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와 관련하여 상세구역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2(특보) ①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이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의보와 정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호우

2. 대설

3. 태풍

4. 강풍

5. 황사

6. 건조

7. 한파

8. 폭염

9. 풍랑

10. 폭풍해일

② 예비특보는 제1항에 따른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한다.

1. 대상구역

2.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3. 그 밖에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대

<신 설>

한민국 영해와 영해로부터 200
해리 이내에 있는 해역으로 하
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
보와 관련하여 상세구역 등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
이 정한다.

제8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문
기상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포함한다.

1. 하천 관리 지원을 위한 수문
기상 관측 및 예측정보
2. 댐 운영 지원을 위한 수문기
상 관측 및 예측정보
3. 그 밖에 물관리 지원을 위하
여 필요한 기상정보

②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기간은
제8조제1항의 예보대상기간을
준용한다.

③ 수문기상 정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유역 단위로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이하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시·군 단위로 발표해야 한다.

1. 1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주의 다음 다섯 번째 주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2. 3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⑤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⑥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외에 국가 가뭄 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학적 가뭄의 통계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문기상 정보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세

<신 설>

부 내용·발표시각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4(태풍예보)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1. 북위 60° 00′ 00″와 동경 180° 00′ 00″의 교점
2. 북위 60° 00′ 00″와 동경 100° 00′ 00″의 교점
3. 북위 00° 00′ 00″와 동경 100° 00′ 00″의 교점
4. 북위 00° 00′ 00″와 동경 180° 00′ 00″의 교점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2. 태풍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제9조(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3. 그 밖에 태풍으로 인한 재해
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기
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태풍예보의 발표시각
· 예보대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
특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
른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
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는 하늘
상태·파고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해양기상 단기예보: 예보대상
기간 5일 이내

2. 해양기상 중기예보: 예보대상
기간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현
상의 실황이 급변하여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현
상의 실황 및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해양기상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이 별표 1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태풍

2. 풍랑

3. 폭풍해일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한다.

1. 대상구역

2.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3.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데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 영해와 영해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있는 해역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 의 영해에 대하여도 해양기상예보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와 관련하여 상세구역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해양기상예측정보) ① 기상청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항만, 항로 및 조업해역 등에서의 해양 관련 활동

제10조(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
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
공예보는 바람 · 시정(視程) · 구
름 · 기온 · 기압 등에 관하여 정
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
다. 이 경우 항공예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장이 정한다.

1. ~ 5. (생 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

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고 · 해상
풍 · 해무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해양기상예측정보를 발표
할 수 있다.

1. 항만기상예측정보

2. 항로기상예측정보

3. 어업기상예측정보

4. 해무예측정보

② 해양기상예측정보의 대상구
역은 제9조제5항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예측정보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기
상청장이 정한다.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
특보) ① 법 제14조의2제1항--
-----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
다)-----

--. <후단 삭제>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공항·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태풍
2. 천둥번개
3. 우박
4. 대설
5. 강풍
6. 저시정(低視程)
7. 호우
8. 구름고도(Ceiling: 하늘의 5/8 이상을 가리는 최하층 구름고도)
9. 난류
10. 착빙(着氷: 공기 중에 냉각된 물방울이 얼음이 되어 항공기 기체에 달라붙는 현상)
11. 산악파(山岳波: 기류가 산을 넘을 때 생기는 대기 중의 파동)
12. 먼지 또는 모래보라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표하되, 항공기상특보의 종류별 기상현상은 별표 2와 같다.

1. 공항경보
2. 급변풍경보
3. 위험기상정보(SIGMET)
4.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13. 급변풍(Wind Shear)

14. 삭제

<신 설>

<신 설>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공항,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예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1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특보
의 대상구역은 공항, 비행정보
구역 및 항공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와 관련하여 발표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

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종류·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 3. (생략)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③ (생략)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

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지구자기장 교란 등이 기상위성 운영,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기상에 주는 영향 및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의 중장기적 변동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는 지구자기장 교란 등이 기상위성 운영,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기상에 주는 영향에 따른 재해발생의 예상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③ 법 제15조제2항제2호-----

-----.

1. ~ 3. (현행과 같음)

4. -----

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신 설>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6. (생략)

③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 항공기상특보-----

②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2. 국방부

3. 행정안전부

4. 해양수산부

5. 해양경찰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해양안전
을 위하여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법 제15조제2항제3호-----

-----.

1. ~ 6. (현행과 같음)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

-----.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다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의2. 산업통상자원부

2의3. 환경부

2의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3.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
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4. (생 략)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및 시·군

7.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재해방
지를 위하여 기상특보의 통보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
또는 특보해제(이하 이 조에서
“특보등”이라 한다)의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국무조정실

<삭 제>

<삭 제>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삭 제>

4. (현행과 같음)

<삭 제>

5. -----
----- 특보-----

⑤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마련해야 -----.

1. (현행과 같음)

2. 특보등의 통보에 따른 수신
알림 체제를 마련할 것

3. (생략)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
등을 통보받는 기관은 특보등의
수신에 따른 조치담당자와 특보
등의 수신설비에 대한 관리담당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
등을 통보받는 기관(항공기상특
보를 통보받는 기관을 제외한
다)이 제4항에 따른 수신 절차
를 마련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
치담당자와 관리담당자를 지정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
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신 설>

2. ----- 전파 -

3.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담당자를 지정해야

-----.

⑦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기관이 제5항---

----- 제6항에 따른 담
당자-----

-----.
-----.

⑧ 기상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특보등 통보 방법,
수신 절차 등 특보의 통보에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특보 및 예비특보의 통
보에 따른 조치) ① 기상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u>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u>	<u>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u> <u>② 법 제15조제1항(특보로 한정한다) 및 제2항(해양기상특보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보보다 우선하여 특보를 활용해야 한다.</u>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 ----- ----- ----- ----- ----- ----- ----- ----- -----. 1. <u>제8조의2제1항 각 호(태풍은 제외한다) 및 제9조제3항</u>----
--	---

의 규정(제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가 둘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시·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 4. (생략)

제18조의2(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등

2.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법 제32조 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제명 및 연구팀 구성

2. 과제수행목표

3. 과제수행능력

4. 과제수행 소요비용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과제의 중복성 여부

2.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과제 수행능력

3. 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신 설>

제20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별표 3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제20조의2(기상과학관의 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상과학관(이하 “기상과학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 관련 자료의 개발·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기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3. 기상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4.·5. (생략)

<신설>

2. 강사현황(강사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제20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

운영 등) ① -----

-----.

1. 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

2. 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

3. 기상과학관 -----

4.·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고

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실

시해야 한다.

1. 기상과학관 설립의 목적 및

<신 설>

<신 설>

필요성

2. 기상과학관의 설립 추진 및 운영 계획

3. 기상과학관의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4. 기상과학관 설립 부지 조성 계획

③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과학관 설립·운영 사전협의 신청서 및 사전평가 결과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기상과학관 설립을 위한 사업을 발주해서는 안 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과학관 설립·운영 사전협의 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다

② (생략)

<신설>

<신설>

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 기관에 알린 후 사전협의
결과 통보를 1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 및 사
전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
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수치예보시
스템의 개발 및 운영의 권한을
수치모델링센터장에게 위임한
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위
임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상
·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 대
상별 교육

2. 법 제35조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다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
에 대한 교육

3.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발도
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인에 대한 교육

4.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5. 법 제35조의4에 따른 교육기
관의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6.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7.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

③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역에 따른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
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
현상의 관측

2. 법 제7조제2항제8호 및 이 영
제4조의6에 따른 도로기상 관
측망의 운영에 필요한 도로기
상 관측장비의 입지·환경 관
리 및 도로기상 관측시설의

운영

3.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운영에 필요한 지상기상 관측장비의 입지·환경 관리 및 지상기상 관측 시설의 운영
4. 법 제7조의3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운영에 필요한 고층기상 관측장비의 입지·환경 관리 및 고층기상 관측 시설의 운영
5.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의 운영에 필요한 해양기상 관측장비의 입지·환경 관리 및 해양기상 관측시설의 운영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7. 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태풍특보 및 태풍예비특보는 제외한다)
8.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 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9.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기상센터의 운영

10.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
관의 운영

④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장에게 위임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상위성 관
측망의 구축·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
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
보 및 특보

⑤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
에 따라 법 제8조의2에 따른 기
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의
권한을 기상레이더센터장에게
위임한다.

⑥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기
후변화 관측망의 운영

<u>제23조(업무의 위탁)</u> ①기상청장은 <u>법 제44조제1항</u>에 따라 다음	2. <u>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및 공고</u> ⑦ 기상청장은 <u>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기상청장에게 위임한다.</u> 1. <u>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내 기상현상의 관측</u> 2. <u>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의 구축·운영</u> 3. <u>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 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u> ⑧ 기상청장은 <u>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 소관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권한을 수치모델링센터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u> <u>제23조의2(업무의 위탁)</u> ① ---- -- <u>법 제44조제2항</u>-----
---	---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의 통보

2의2. 법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 등 기후 감시

<신설>

3. 3의2. (생략)

4.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및 전문교육

4의2. 기상과학관의 운영

<신설>

5. (생략)

-----.

처리방법 및 -----
-- 고시해야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4조의4에 따른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2의2. ----- 지구대기 감시

2의3. 법 제23조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활용

3. 3의2. (현행과 같음)

4. 법 제35조제3항-----
----- 종사자 -----

4의2. 법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교육 실시

4의3. 법 제35조의6제1항 및 법 제35조의7에 따른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의 운영·홍보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u>법 제44조제1항</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자</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11. (생략) ③<u>제1항</u>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u>매반기</u>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u>통보</u> 하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u>와 같다.	6.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②<u>법 제44조제2항</u>----- ----- <u>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u>”이란 ----- -----. 1. ~ 11. (현행과 같음) ③<u>제1항 및 제2항의 규정</u>----- ----- <u>매 반기</u> ----- <u>통보</u> ----- <u>해야</u>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u>별표 4</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7301